

1.1 학교법인초당학원정관

개정 1996.06.07.	개정 1996.08.13.	개정 1997.11.08.	개정 1998.04.01.
개정 1998.05.01.	개정 1998.09.05.	개정 1999.09.15.	개정 2000.07.01.
개정 2001.03.30.	개정 2002.10.22.	개정 2002.11.12.	개정 2004.04.13.
개정 2005.03.01.	개정 2006.05.09.	개정 2006.06.28.	개정 2007.04.30.
개정 2008.02.22.	개정 2008.05.13.	개정 2010.03.19.	개정 2012.05.07.
개정 2016.07.01.	개정 2016.08.19.	개정 2018.10.25.	개정 2019.06.24.
개정 2019.08.22.	개정 2020.05.13.	개정 2020.11.06.	개정 2021.12.23.
개정 2022.02.24.	개정 2022.04.21.	개정 2022.06.23.	개정 2022.12.29.
개정 2023.06.28.	개정 2024.06.01.	개정 2024.08.23.	개정 2024.10.31.
개정 2025.05.19.	개정 2025.06.25.	개정 2025.07.30.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및 중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초당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 1. 초당대학교
 - 2. 백제고등학교
-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에 둔다. <개정 2016.07.01.>
-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에 속하는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6.07.01., 2020.11.06.>

- ③ 제1항의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편성·집행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개정 2016.07.01.>

1. 대학교 : 대학평의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개정 2022.06.23.>

- ④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06.>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 보고 및 공시) ① 이 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연도중에 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교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

회의 심사·의결,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07.01., 2022.06.23.>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4조 (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15조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6조 (회의) <삭제>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 ②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③ 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임원중 2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은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①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②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자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장이었던 자 <전조개정 2020.11.06.>

제20조의 3(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법인 산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시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 4(추천위원회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2.06.23.>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2.06.23.>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22.06.23.>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따로 정한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개정 2020.11.06.>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 <개정 2022.06.23.>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개정 2022.06.23.>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자 <개정 2022.06.23.>

제22조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위임 사항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결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의2(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의 임원은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있는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신설 2022.06.23.>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24.>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고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6.23.>

제30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인에서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설립목적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절에

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내지 15인의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3조 (위원의 선출등)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입후보자와 위원 정수가 동수 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개정 2022.06.23.>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하여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 정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7일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④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선출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35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6조 (위원의 의무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위원의 퇴직) ① 학부모위원의 경우 당해 학생이 전학 또는 졸업하였을 때, 교원위원의 경우 전보되었을 때 및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생이 졸업하였을 때 당해 학부모위원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3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2.06.23.>

1. 학교헌장, 학교규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에 관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 수련(학생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2.06.23.>
16. 삭제 <2022.06.23.>
17. 위원회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6.23.>
18. 학생대표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안사항 <신설 2022.06.23.>
1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2.06.23.>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제1항 제10호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교직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40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6.23.>

제41조 (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의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⑤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2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2.06.23.>

제43조 (의사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4조 (회의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진행 내용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이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산과 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이하 이 절에서 “관할청”이라 한다)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6.23.>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 (간사)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기록 등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6.23.>

제48조 (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집행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거나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49조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운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0조 (관할청의 지원·지도) ① 관할청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관할청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이사장 감독 등) ①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 운영 또는 심의 또는 자문기구 이상의 역할을 시도하여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때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게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는 관할청에 보고하고 시정될 때까지 심의 또는 자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6.23.>

② 운영위원회를 해산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정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2조 (운영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53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의거 우리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백제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4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제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전남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4. 심의 등 결과 경제적 보상·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공제회 지원 신청 결정
5. 협박, 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원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 등 권고
6. 분쟁의 사전예방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개선 사항 권고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분쟁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5조 (분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학교 교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직무를 대행한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교장제외)·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은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학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56조 (위원장)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58조 (분쟁조정 신청) ①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9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으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1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의견진술이나 화해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63조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한 사항에 대한 공제회의 경제적·법률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회 기금 조성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4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 (운영세칙)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절 대학평의위원회

제66조 (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7조 (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4인의 평의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5., 2021.12.23.>

1. 교원 5인
2. 직원 4인 <개정 2021.12.23.>
3. 조교 1인 <신설 2018.10.25>
4. 학생 2인 <호변경 2018.10.25>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호변경 2018.10.25.>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의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68조 (평의원의 위촉)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6.28.>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 <신설 2018.10.25.>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 또는 기타 학생을 대표하는 조직에서 추천한 자. <호변경 2018.10.25.><개정 2023.06.28.>
5.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호변경 2018.10.25.>

② 제1항 각 호의 추천방법은 1인 1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신설 2023.06.28.>

제69조(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70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0조의 2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70조의 3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71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욕탕업
3. 서비스업 <신설 2016.07.01.>
4. 교육서비스업(비행교육원) <신설 2016.07.01.>
5. 교육서비스업(항공운항) <신설 2024.08.23.>
6. 교육서비스업(항공정비) <신설 2024.08.23.>
7. 교육서비스업(드론및항공모빌리티) <신설 2024.08.23.>
8. 항공정비업 <신설 2024.08.23.>
9. 드론 및 항공모빌리티 운영업 <신설 2024.08.23.>
10. 항공 레저·스포츠 관광업 <신설 2024.08.23.>
11. 항공방재업 <신설 2024.08.23.>
12. 기타 관련 부대업 <신설 2024.08.23.>

제72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71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초당학원 사업소를 경영한다.

제72조의2 (수익사업의 지점 설치) 제71조 4호 사업을 위하여 지점을 설치 경영할 수 있다. <신설 2020.05.13.>

제73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부동산 임대의 사업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에 둔다. <개정 2016.07.01.>

제73조의2 (지점의 주소) 제71조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임대사업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26-2
2. 교육서비스업(비행교육원):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1392
3. 항공방재업: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1392

<전문개정 2024.09.01.>

제74조 (관리인) ① 제71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75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76조의2(기록물 관리) 해산명령을 받은후 3개월 이내에 학적부,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등 기록물을 관할청에 제출한다. <신설 2020.11.06.>

제77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개정 2019.06.24.>

제78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6.24.>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며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6.24.>

③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이하 “교원”에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교원의 신규채용은 일반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9.06.24.>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보장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6년) <개정 2016.07.01.>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9.06.24.>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9.06.24.>

라. <삭제 2016.07.01.>

마. 비정년트랙 교원의 근무기간은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6.24.>

2. 급 여

정관 제85조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주당 교수시간, 소속 학과(부), 연구비 지원, 근무지 및 학사업무 수행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6.24.>

4. 업적 및 성과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 약정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12월3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6.07.01><개정 2019.06.24.>

1. 교 수 정년까지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2. 부 교 수 6년

3. 조 교 수 4년

4. 삭제 <2016.07.01.>

- ⑤ 삭제 <2019.06.24.>

- 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기타 교원의 주요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22.12.29.>

- ⑦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4.>

- ⑨ 제3항 제1호 각목 이외에 대학교육기관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대하여는 절차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9.06.24.>

- ⑩ 교원,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6.24.>

- ⑪ 제2항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의 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 보유자만 해당)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6.25.>

- ⑫ 제11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한다. <개정 2025.06.25.>

제78조의 2(신규채용 방법)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공개 전형은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6.24., 2022.06.23.>

② 공개전형 응시 자격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4.>

④ 제3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 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9.06.24.>

⑤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등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06.24.>

제78조의 3(교원 정년보장 임용) ① 제78조 3항의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는 정년보장전임교원임용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③ 정년보장 교원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9.06.24.>

<본조신설 2016.07.01>

제79조(기간제교원) ①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12.29.>

1. 교원이 제8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개정 2022.06.23.>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79조의2 (전형결과의 공개) <삭제>

제 2 관 신분보장

제80조 (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4.>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06.24.>

제8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8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80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8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8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
- 6의2. 제80조 제1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

설 2019.06.24.>

7. 제8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80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80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80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제80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9.06.24.>

제8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8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8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 ② 제8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③ 제1항 및 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4조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교원에게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⑥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84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며,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4.08.23.>

제85조 (보수) ①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직무의 난이성과 책임의 정도 및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 연봉제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고등학교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8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학교육기관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본문 중 “교원”을 “대학교육기관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징계처분”을 “임용 계약에서 정한사유”로 본다. <신설 2019.06.24.>

제87조 (명예퇴직수당) ① 명예퇴직 교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는 관할청의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를 준용한다.

② 대학교 퇴직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학교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7.01.>

제88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9.08.22.>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89조 (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이조에서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대학교육 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6.24.>

제9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24.>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단, 중고교에 한함)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정관 제78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임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객관적인 평가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개정 2019.06.24.>

1.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91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원 외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92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는 부총장으로 한다. 다만, 부총장이 없을 때에는 교무처장이 한다. <개정 2019.06.24.>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6.24.>

제93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4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95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96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9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당해 학교별로 각각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6.08.19., 2022.04.21.>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08.19., 2022.02.24.>

1.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02.24.>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고등학교이하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97조의2 (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02.24.>

②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02.2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6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8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9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0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1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는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2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4.>

제103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4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06.23.>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23.>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23.>

⑥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6.23.>

제105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06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의 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25.>

제106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02.24.>

제10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10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109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계약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06.23.>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3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06.23.>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06.23.>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본호신설 2022.06.23.>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10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근속승진·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계약조건을 정하여 연봉제로 계약 임용한다. <개정 2019.06.24.>

④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에 한 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06.24.>

⑤ 대학교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절차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9.06.24.>

제110조의 2 (근속승진) 근속승진 일반직원의 승진대상, 경력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110조의 3 (명예퇴직제) ① 고등학교이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 받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사립학교

에서 근무한 기간과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무직원 중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관할청의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의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를 준용한다.

③ 단, 대학교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은 제87조 명예퇴직 교원에 준용한다. <개정 2024.06.01.>

제 110조의 4 (특별승진) ① 정관 제110조의 3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111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 (보수) ① 일반직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직무의 난이성과 책임의 정도 및 성과평가에 따라 110조에 의거 성과급 연봉제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일반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13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 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115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② 법인 사무국에는 서무과와 경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참사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116조 (총장 등) ① 초당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교무부총장, 행정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참여로 보한다. <개정

2022.04.21.>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무부총장, 행정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4.21.>

제117조 (대학원장·학장·학부장·학과장)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교에는 학장, 학부장, 학과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9.>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보직은 교원으로 보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보직자는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소속부서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118조 (총장 직속기구 및 대학본부) ① 총장 직속기구로 비서실과 홍보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0.31.>

- ② 대학본부에 기획처, 교무처, 학생취업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입학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05.19.>

- ③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하고, 처장과 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조교수 이상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하는 부처장 및 부실장을 둘 수 있다.

- ④ 각 처 및 실에 소속된 과 또는 팀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⑤ 각 과장은 부참사 이상으로 보하고, 팀장은 부주사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팀장은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8조의 2 (대학원) ① 각 대학원에는 교학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0.31.>

- ② 교학과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제118조의 3 (단과대학) 각 단과대학에 교학과(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2.29.> <개정 2024.10.31.>

제118조의 4 (지역 공공형 사립 연합대학) <개정 2024.10.31., 2025.07.30.>

- ① 글로컬 연합대학(이하“연합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초당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가 글로컬대학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연합하는 체계를 말한다.

- ② 연합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합대학 거버넌스를 둔다.

- ③ 연합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대학 거버넌스의 심의·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9조 (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분장 업무는 별도의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120조 (부속기관)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사무를 관장한다.

-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다.

제121조(도서관) ① 대학교에 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② 도서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사서장을 둘 수 있으며, 부참사 이상으로 보하되, 사서장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③ 도서관에 세칙으로 정하는 과를 둘 수 있으며, 각 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절 고등학교

제122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제123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6.24.>

제 4 절 정 원

제124조 (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125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광주일보 신문에 공고한다.

제12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2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비고
이사장	김기운	1920. 7. 3	4	전남 목포시 남교동 105	
이 사	김동구	1944. 3. 5	4	전남 목포시 남교동 105	
	최병옥	1939.12.24	4	전남 목포시 남교동 105	
	박윤종	1919.12.23	4	광주직할시 서석동 30	
	곽병문	1915.12.27	2	전남 목포시 북교동 653	
	노진태	1923. 3.21	2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41	
	배종무	1929.12.13	2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40-462	
감 사	옥기호	1922. 8.10	2	전남 목포시 양동 86-44	
	임귀식	1935. 4. 1	1	전남 목포시 호남동 1-202	

제128조 (청렴의무)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06.23.>

제129조 (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28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

② 제128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06.23.>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1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0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제 3조 제78조, 제89조 내지 제95조, 제115조 내지 제121조 및 제124조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초당산업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초당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백제여자상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백제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 제1항의 변경 정관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 정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34조의 정관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2001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 ③ (최초의 규정)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④ (자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10조 제3항중 계약조건을 정하여 연봉제로 계약임용하는 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신규채용되는 일반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의 장 임기 변경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학의장의 임기는 제 78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제78조(임용) 제3항·제9항·제10항, 제8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는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 하는 경우 이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사무조직정원

총 계 : 7명

* 일반직 계 : 7명

3급 (부참여) 1명

4급 (참 사) 1명

5급 (부참사) 1명

6급 (주 사) 1명

7급 (부주사) 1명

8급 (서 기) 1명

9급 (부서기) 1명

* 기능직 계 : 4명

6등급 1명

8등급 1명

9등급 1명

10등급 1명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종 \ 학교별	대 학 교	고 등 학 교
총 계	59명	9명
일반직계	(51명)	(5명)
2급 (참 여)	1명	
3급 (부 참 여)	1명	
4급 (참 사)	2명	
5급 (부 참 사)	5명	1명
6급 (주 사)	7명	1명
7급 (부 주 사)	11명	1명
8급 (서 기)	12명	1명
9급 (부 서 기)	12명	1명
기술직계	(8명)	
4급 (사서참사)	1명	
5급 (사서부참사)	1명	
6급 (사 서)	1명	
7급 (부 사 서)	1명	
8급 (사 서 보)	2명	
9급 (사 서 보)	2명	
기능직계	(16명)	(4명)
6등급	1명	
7등급	1명	
8등급	3명	
9등급	3명	1명
10등급	8명	3명
고 용 원	4명	